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센터장	부원장

1. 출장목적

○ 독일의 농지은행 및 농지관리제도 조사
○ 독일의 휴경농지 관리 및 활용정책 조사
○ 오스트리아의 농지은행 관련 제도 조사
○ 오스트리아의 휴경농지 관리 및 활용정책 조사
○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

2. 출장개요

출 장 자			출 장 지 역	출 장 기 간
소 속	직 위	성 명		
농업구조·경영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 수 석	독일, 오스트리아	2007. 6. 19 ~ 6. 29 (11일간)

3. 출장일정

일 자	일 정	면담자 및 면담시간	조사 내용
6월 19일	서울 출발, 독일(프랑크푸르트→ 뮌헨) 도착		
6월 20일	바이에른주 농림성 방문	Richard Carmanns (STMLF), 오전 9시	◦독일의 농지제도 및 이용현황 ◦독일연방 및 바이에른주의 휴경농지 관리정책
6월 21일	바이에른 공익토지공사(bbv-Landsiedlung) 방문	Franz Stemmer (bvv-LS), 오전 9시	◦독일의 농지은행제도 ◦공익토지공사의 조직, 기능 ◦선매권, 농장거래시장 내용
6월 22일	오버바이에른 농촌개발청 방문	Egon Ankenbrand (ALE Oberbayern) 오전 9시	◦농촌개발청의 임무와 역할 ◦공익토지공사와의 관계 ◦농지데이터 관리시스템
6월 23일	뮌헨대학도서관 및 서점 자료수집	도서관 이용 (9시 ~ 16시)	독일의 농지관리제도, 휴경지 활용정책 관련 자료 수집
6월 24일	뮌헨 → 인스부르크 이동		
6월 25일	◦인스부르크 농업청 방문 ◦인스부르크→ 비인 이동	Leonhard Steiger (농업청소장), 오전 9시	◦오스트리아 지역단위 농지관리방식 ◦휴경농지활용방식
6월 26일	오스트리아 연방농림성(토지개혁국) 방문	Wofgang Schwaiger (BLFUW, 토지개혁국), 오전 9시	◦오스트리아 농지관리제도 및 정책 ◦농지은행관련 사업
6월 27일	◦비인 → 상폴텐 이동 ◦니더오스트리아주 농림성 방문	Kurt Wollinger (NOE), 오후 1시	◦농지관리제도 실시체계 ◦휴경농지 활용 및 관리정책
6월 28일 - 29일	오스트리아 출발(비인→프랑크푸르트), 서울 도착		

4. 면담자

Dr. Richard Carmanns

Ministerialrat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und Forsten
Ludwig str. 2
80539 München, Germany
Tel: +49-89-2182-2304
Fax: +49-89-2182-2712
E-mail: richard.carmanns@stmlf.bayern.de

Mr. Franz Stemmer

Bereichsleiter Landwirtschaft
bbv-Landsiedlung GmbH
Max-Joseph str. 9
80333 München, Germany
Tel: +49-89-5906829-14
Fax: +49-89-5906829-33
E-mail: franz.stemmer@bbv-landsiedlung.de

Mr. Christian Saur

Bereichsleiter Flurneuordnung
bbv-Landsiedlung GmbH
Max-Joseph str. 9
80333 München, Germany
Tel: +49-89-5906829-13
Fax: +49-89-5906829-33
E-mail: christian.saur@bbv-landsiedlung.de

Mr. Egon Ankenbrand

Sachgebietsleiter Öffentlichkeitsarbeit
Amt für Ländliche Entwicklung Oberbayern
Infanteriestrasse 1
80797 München
Tel: +49-89-1213-1010,
Fax: +49-89-1213-1406
E-Mail: egon.ankenbrand@ale-obb.bayern.de

Mr. Leonhard Steiger

Amtvorstand Land- und Forstwirtschaft
Stadt Innsbruck
Trientigasse 13
6010 Innsbruck, Austria
Tel: +43-512-5360-7180
Fax: +43-512-5360-7182
E-mail: post.land.forstwirtschaft@innsbruck.gv.at

Dr. Wolfgang Schwaiger
Ministerialrat
Bundesministerium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Umwelt und Wasserwirtschaft
1012 Wien, Austria
Tel: +43-1-71100-6784
Fax: +43-1-71100-6507
E-mail: wolfgang.schwaiger@lebensministerium.at

Mr. Kurt Wollinger
Leiter der Abteilung Agrarrecht
Amt der Niederösterreich Landesregierung
Landhausplatz 1
3109 St. Pöllten, Austria
Tel: +43-2742-9005-12995
E-mail: post.lf1@noel.gv.at

Mr. Karl Mayr
Technischer Leiter
Niederösterreich Agrarbezirksbehörde
Landhausplatz 1
3109 St. Pöllten, Austria
Tel: +43-2742-9005-15557
Fax: +43-2742-9005-16155
E-mail: karl.mayr@noel.gv.at

Dr. Otto Kaurzim
Amtvorstand
Niederösterreich Agrarbezirksbehörde
Landhausplatz 1
3109 St. Pöllten, Austria
Tel: +43-2742-9005-16080
Fax: +43-2742-9005-16155
E-mail: otto.kaurzim@noel.gv.at

Mr. Gottfried Angerier
Abteilung Landwirtschaftsförderung
Amt der Niederösterreich Landesregierung
Landhausplatz 1
3109 St. Pöllten, Austria

Tel: +43-2742-9005-12990
Fax: +43-2742-9005-13535
E-mail: post.lf3@noel.gv.at

Mr. Christian Steiner
Abteilung Landentwicklung
Amt der Niederösterreich Landesregierung
Landhausplatz 1
3109 St. Pöllten, Austria
Tel: +43-2742-9005-16055
Fax: +43-2742-9005-16580
E-mail: post.lf6@noel.gv.at

Mrs. Marianne Priplata
Landwirtschaftskammer Niederösterreich
Wiener str. 64
3100 St. Pöllten, Austria
Tel: +43-2742-259-5111
Fax: +43-2742-259-955111
E-mail: marianne.priplata@lk.noe.at

5. 주요 조사내용

5.1. 독일의 농지 관련 제도 및 실태

(방문조사기관: 독일 바이에른주 농무성)

□ 독일의 농지제도

○ 독일에서 농지 및 임야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토지거래법』(Grundstücksverkehsgesetz)인데, 이 법은 토지의 매매 및 양도를 허가제로 하고 있음. 다만 일정규모(1ha) 이하의 토지에 대한 양도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토지거래(양도)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양도가 토지에 대한 불건전한 배분을 의미할 때, 양도로 인해 토지가 비경제적으로 축소·분할될 때, 계약가격이 실제의 토지가격과 커다란 불일치를 가져올 때의 세 가지 경우임.

- 토지에 대한 불건전한 배분은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에 토지를 구입하려는 농민이 있는데, 이 토지가 비농민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농민이 비농민에 대해 우선권이 있음)
- 비경제적 축소 및 분할은 양도로 인해 토지가 최소경영규모 이하로 분할되는 것
- 계약가격과 실제가격의 큰 격차는 대개(양도토지의 불건전한 배분에서 생기는) 우선권자를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가가 거부됨. 계약가격과 실제가격 간의 커다란 불일치는 계약상의 가격이 해당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시세가격인 거래가치보다 50% 이상 높은 때를 말함.

○ 토지에 대한 불건전한 배분으로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선매권(Vorkaufsrecht)을 갖고 매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공동이익토지공사(Gemeinnützige Landgesellschaft)임.

○ 독일에서 농지임대차를 규율하는 법이 『농지임대차거래법』(Landpachtverkehrsgesetz, LPachtVG)인데,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함. 즉 신고제가 기본원칙인데, 이는 토지거래에서의 허가제와 다른 것임.

○ 농지임대차제도의 기본취지는 『토지거래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지임대차가 농업구조개선에 일정한 정도로 기여하게 하는 데 있음.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신고된 임대차계약이 농업구조개선에 반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 해당 관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지임대차거래법』상에 나타난 이의제기의 원인은 ① 임대가 토지이용의 불건전한 배분, 불건전한 집중을 의미할 때, ② 임대로 인해 공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토지의 이용이 비경제적으로 나누어질 때, ③ 임차료가 정상적인 경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비교해서 적정하지 않게 책정되어질 때 등임.

□ 독일의 농지거래 및 임대차 현황

○ 2005년도 독일의 농지거래 건수는 36,404건으로 이 중 서독지역이 23,798건, 동독지역이 12,606건을 차지함. 그런데 거래면적으로는 서독지역이 38,549ha에 머물고 동독지역이 81,325ha로 더 크게 나타남. 이에 따라 건당 평균 거래면적이 서독지역 1.62ha, 동독지역 6.45ha, 독일 전체 3.29ha로 동서독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동독지역 내에서는 다시 토지시장에서 시장가치로 거래되는 것과 구동독 집단 및 국영농장의 사유화와 관

련되는「배상 및 보상법」(Entschä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 EALG)에 의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되는 농지거래가 있음.

○ 농지거래규모에 대한 동서독 차이에서 비록 거래면적은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더 많았지만, 농지거래액은 서독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서독지역 거래총액은 약 6억 1천만 유로로 동독지역 거래액 2억 9천만 유로의 약 2.1배에 달하고, 이를 거래면적으로 환산하면, 서독지역에서 거래된 농지의 ha당 가치는 15,825 유로인데 반해, 동독지역 농지의 ha당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3,964 유로, 「배상 및 보상법」(EALG)으로 거래된 것이 2,545 유로로 계산됨.

<2005년도 독일 농지거래 현황>

단위: 건, ha, 유로

구분	거래건수	거래면적	건당 면적	거래총액	ha당 거래액
서독지역	23,798	38,549	1.62	610,021,000	15,825
동독지역(시장거래)	11,935	58,156	4.87	230,559,000	3,964
(배상법 거래)	671	23,169	34.53	59,164,000	2,545
독일전체(시장거래)	35,733	96.705	2.71	840,580,000	8,692
(배상법 거래 포함)	36,404	119,874	3.29	899,744,000	7,506

<독일의 임차농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천ha, %, ha

연도	경지면적(A)	임차농지면적(B)	비중(B/A)	평균경지면적	임차농의 평균임차면적
1991	17,037	9,087	53.3	26.5	22.8
1993	17,022	10,046	59.0	28.1	26.7
1995	17,157	10,446	60.9	30.3	29.9
1997	17,132	10,671	62.1	32.0	32.3
1999	17,119	10,778	63.0	36.3	34.0
2001	16,978	10,845	63.9	38.2	36.3
2003	16,982	10,853	63.9	40.4	38.0
2005	17,035	10,636	62.4	43.1	38.9

○ 2005년 임차농지의 면적은 1,063만 6천ha로 전체 농지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면적과 비중에서 큰 변화가 없음. 하지만 농업경영체 수의 감소로 임차농업경영체가 임차하는 평균 임차지의 크기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그 크기가 38.9ha에 이름. 또한 농업경영체 전체의 영농규모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5년 평균경지면적이 43.1ha로 나타남.

5.2. 독일의 농지은행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방문조사기관: 독일 오버바이에른 농촌개발청, 바이에른 공동이익토지공사)

□ 농지관리사업 관련 기구

○ 독일에서 농지의 비축과 교환·분합, 선매권 행사 등으로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농지관리사업은 각 주별로 실시하고, 개별 주에서는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리청과 실제 사업을 실시하는 실행기관을 두고 있음.

○ 바이에른주의 경우 농지관리사업의 총괄적 관리는 주농무성이, 지역별 관리는 주 산하 7개의 농촌개발청이 담당하고, 사업의 실행은 바이에른 공동이익토지공사인 “바이에른 농민연맹 토지공사”(bbv-토지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 농촌개발청은 농지관리사업 중 일부와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마을재정비사업 등을 주관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음. 즉 농지관리사업 중 농지의 거래 및 임대차 등 농지의 유동화와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공동이익토지공사에 위임하고, 농지의 교환·분합은 농촌개발청이 사업을 허가하고 감독하는 관리청으로 참여하고 있음.

□ 공동이익토지공사의 조직

○ 공동이익토지공사의 설립근거는 1919년에 제정된 『제국이주정착법』(Reichssiedlungsgesetz, RSG)에 있음. 이 법에 따라 이주정착회사(Siedlungsunternehmen)가 선매권을 갖게 되는데, 공동이익토지공사가 법률상의 이주정착회사에 해당함.

○ 현재 독일에는 9개의 공동이익토지공사가 있고, 1개의 연방연합회가 있음. 이 9개의 공사가 10개주, 2개 자치도시주를 담당하고 있음.

○ 공동이익토지공사는 공공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유한회사(GmbH)로 구성됨. 회사의 대표는 6개 공사에서 주정부로 되어 있고, 바이에른주에서는 바이에른 농민연맹이 대표이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민간회사가 대표임.

□ 공동이익토지공사의 업무

○ 공동이익토지공사의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됨.

(1) 농지관리업무

(2) 통합적 농촌개발 및 마을재정비사업의 실행업무

(3) 농업투융자사업 및 농업용 건축에 대한 컨설팅 업무

○ 공동이익토지공사의 업무 중 가장 주된 업무인 농지관리업무는 다시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세분됨.

① 농지의 비축을 중심으로 한 매입, 매각

② 제3자를 위한 수탁매입

③『제국이주정착법』및『토지거래법』에 의한 선매권 행사

④ 보유 및 수탁농지 관리

⑤ "농장거래시장"(Hofbörse) 운영 (매매, 임대차)

⑥ 농지의 교환과 분합, 토지이용권 교환

○ 토지비축사업은 농업구조개선과 농촌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이익토지공사가 자체자금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보유농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짜여짐.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비축농지를 임대함.

<독일 공동이익토지공사의 농지비축사업 현황>

단위: ha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입면적	서독지역	5,030	4,460	4,976	3,458	3,884	3,773
	동독지역	2,843	2,660	22,760	14,485	1,361	5,164
매각면적	서독지역	4,800	5,360	4,130	3,943	4,303	4,349
	동독지역	860	1,823	1,149	2,017	2,018	2,098
비축면적	서독지역	19,910	19,010	19,868	19,359	18,946	18,142
	동독지역	13,732	14,570	36,183	48,679	47,462	50,528

○ 제3자를 위한 수탁매입은 자연보호와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해당기관을 대신해 매입하는 사업임. 소요되는 자금은 해당 기관이 부담함. 지금까지 사업의 50% 정도는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었음.

○『제국이주정착법』및『토지거래법』에 의한 선매권에 따라 공동이익토지공사들이 매입한 농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음.

<독일 공동이익토지공사의 선매권에 의한 매입농지 현황>

단위: ha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면적	785	468	345	320	320	265	336

○ 공동이익토지공사는 공사의 비축농지와 제3자를 위해 매입한 농지, 그리고 주정부 등 공공기관이 관리를 위탁한 토지를 관리함. 2005년 총 191,510ha 토지를 관리했는데, 여기에는 22,460ha의 하천부지 및 해면부지가 포함됨. 2005년 서독지역에서 공사가 약 21,000ha의 토지를 관리했는데, 이 중 17,450ha는 농업에 이용되고 2,800ha는 자연보호지역으로 관리됨.

○ 2003년 지역적으로 시작된 "농장거래시장"(Hofbörse)은 현재 공사의 정규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2005년 11월에는 연합회가 전국 네트워크인 인터넷 포탈 사이트 www.hofboersen.de를 설치함. 농장거래시장은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를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업임. 즉 농지매매와 임대차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임. 현재 니더작센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경지정리사업의 일종인 "자발적 농지교환"과 "자발적 농지이용권 교환", "신속한 분합" 사업은 경지정리사업 관할청(농촌개발청)의 위탁업무로 공동이익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자발적 농지이용권 교환은 새로 도입된 사업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토지이용권만 교환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2005년 처음으로 5건이 성사되었는데, 여기서 155필지, 128ha의 이용권이 22명의 교환당사자들 간에 교환되었음.
- 독일의 이 사업들은 참여자의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격을 현실지가에 근접한 거래가치로 평가하고 있음.
- 이 사업들의 법적 근거는 서독지역에서는 『경지정리법』, 동독지역에서는 『농업적응법』에 두고 있음.

5.3. 독일의 휴경농지 관리 및 활용정책

(방문조사기관: 바이에른 주농무성)

□ 휴경정책

○ 독일은 EU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 과잉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휴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휴경사업은 직불금을 받는 경작지의 일부(경종농업경지의 8~9%)를 의무적으로 휴경하게 하고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수혜자에게 휴경농지를 농지로서 보전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임.

□ 휴경 의무면적 및 보조금 산출방식 (사례)

○ (가정) 50ha 경종농업경지, 50ha 영구초지, 10ha 관상수 식재지를 가진 농업경영체로서 축산과 낙농을 겸업하고 있음.

○ 현재 직불금은 경지의 면적비율로 산출되는 경지단가와 축산규모로 산출되는 경영체단가를 합산하여 이를 다시 경지유형별 면적크기와 곱하여 산출함.

○ 가정한 농업경영체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경지는 50ha 경종농업경지와 50ha 초지가 됨(관상수 식재지 제외).

- 이 중에서 휴경의무면적은 농업경지 50ha에서 현행 휴경비율(8.17%)를 곱한 것임. (50 × 0.0817 = 4.09ha)
- 이로써 직불금 대상 면적은 휴경농지 4.09ha, 경종농업경지 45.91ha, 영구초지 50ha가 됨.
- 경영체단가는 축산규모에서 산출되는 축산직불금 총액을 직불금 대상경지 중에서 휴경의무면적을 뺀 면적으로 나누어 얻음.
- 경지유형별 직불금 단가를 독일 전체 평균으로 가정하면, 경종농업경지는 ha당 301유로, 영구초지는 79유로임. (여기서 해당 농업경영체의 경영체단가는 184유로로 산출된 것으로 가정함)

<독일의 직불금 산출방식>

단위: ha, 유로

구분	수급대상면적	경영체 단가	경지단가	총단가
휴경농지	4.09	-	301	301
농업경지	45.91	184	301	485
영구초지	50	184	79	263
계	100	-	-	-

○ 독일은 현재 EU 차원의 단일직불제(SPS)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경영체단가와 경지단가의 구분을 없애고 경지로 단일화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경지유형별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를 2013년까지

단일화하겠다는 것임. 이로써 휴경농지도 동일한 크기의 보조금을 받게 됨. 하지만 이러한 단일화가 독일 전체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단일화하는 것임.

<2013년까지 직불금 단가 조정방식>

단위: ha, 유로

구분	수급대상면적	2005	2010	2011	2012	2013
휴경농지	4.09	301	304	309	317	328
농업경지	45.91	485	469	438	391	328
영구초지	50	263	270	283	301	328
계	100	-	-		-	

□ 휴경농지 활용방안

○ 대체에너지 작물과 산업용 원료의 경작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휴경지에 대해 이 작목들의 경작을 허용하고 있음.

- 허용되는 작목은 윤활유로 사용되는 식물용 기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 바이오매스 등임.

○ 휴경농지에 에너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규정(EG Nr. 1973/2004)과 IACS의 실행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즉 에너지작물 재배자는 수집상이나 최초가공업자와 생산물에 대한 인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 내용을 관할 관청(연방농업식품청)에 통지해야 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재배자에게 에너지작물 보조금이 추가로 지불됨.

5.4. 오스트리아의 농지관련 제도 및 실태

(방문조사기관: 오스트리아 연방농림성, 니더외스터라이히 주농무성)

□ 농지관련 제도 및 정책

○ 오스트리아에서 농지의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토지거래법」(Grundverkehrsgesetz)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으로 운용되고 있음.

○ (니더외스터라이히 주)「토지거래법」은 비농민의 농지 및 임야 소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외국인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농지 및 임야의 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2ha 이상의 농지임대차도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또한 자립적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농업정착기본법」(Landwirtschaftliches Siedlungsgrundsatzgesetz)을 제정하여 운용하

고 있음.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① 신규의 농업경영체 창설

② 경제적으로 불리한 곳에 위치한 사업장 및 농장가옥의 이전

③ 자립성을 상실한 농업경영체를 자립적인 경영체로 전환

④ 고령농 및 은퇴농의 경영이양

⑤ 임차를 자작으로 전환

⑥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 확대

○ 이처럼 「농업정착기본법」은 농업구조개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갖추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현장에 정착할 때 자립적인 경영체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사업으로 활용됨.

-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의 경우 정착사업담당기구가 상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사업의 이용도 면에서 과거에는 많은 활용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농지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농지관리사업으로 농지의 교환과 분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농지 교환·분합사업은 독일과 달리 농지의 가치평가를 거래가치로 하지 않고 토지의 비옥도를 나타내는 수확점수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처럼 자발적 교환은 불가능하고 공권력에 의해 농지의 교환·분합이 실행되고 있음.

□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

<2005년도 오스트리아 농업경영체 경지면적별 구성>

단위: 개소, ha

구분	전체 농업경영체	
	경영체	면적
5ha 미만	58,148	142,415
5-10ha 미만	31,998	233,999
10-20ha 미만	38,670	558,349
20-30ha 미만	18,825	458,771
30-50ha 미만	15,384	586,150
50-100ha 미만	7,860	527,044
100-200ha 미만	1,959	265,526
200ha 이상	1,051	495,578
합 계	173,895	3,267,833

○ 2005년 오스트리아에는 약 174,000개소의 농업경영체가 약 327만ha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 그리고 약 15,000개소의 임업경영체가 약 430만ha의 임야를 경영하고 있음.

- 2005년도에 농업경영체 중 자작농이 163,674개소로 94.1%를 차지하고, 자작지 면적이 2,482,285ha로 전체 농경지의 76%로 나타남.

<오스트리아의 경지규모별 농림업경영체 구성>

단위: 개소

구분	1990	1995	1999	2005
경지없음	3,910	2,407	2,284	291
5ha 미만	97,480	66,233	52,663	39,664
5-10ha 미만	49,063	43,884	40,538	34,108
10-20ha 미만	54,951	49,369	45,704	39,376
20-30ha 미만	33,414	30,992	29,079	25,699
30-50ha 미만	26,047	27,219	27,021	26,363
50-100ha 미만	10,566	12,078	13,032	16,073
100-200ha 미만	3,431	3,706	3,916	4,752
200ha 이상	3,048	3,211	3,271	3,265
합 계	281,910	239,099	217,508	189,591

<오스트리아의 경지규모별 농림업경영체 보유경지 면적>

단위: ha

구분	1990	1995	1999	2005
5ha 미만	243,158	178,508	147,649	116,713
5-10ha 미만	352,386	316,310	292,462	245,710
10-20ha 미만	800,482	720,404	667,032	579,078
20-30ha 미만	817,199	760,948	714,975	630,480
30-50ha 미만	984,265	1,034,929	1,031,563	1,011,977
50-100ha 미만	691,711	791,682	858,195	1,066,590
100-200ha 미만	478,491	514,685	541,077	646,763
200ha 이상	3,187,123	3,213,741	3,265,662	3,271,943
합 계	7,554,815	7,531,207	7,518,615	7,569,254

○ 1990~2005년 사이 오스트리아에는 농림업경영체 수는 크게 줄었으나(약 92,000개소), 농림업 경지면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경영체당 경지면적은 크게 증가함.

5.5. 오스트리아의 휴경농지 관리 및 활용정책

(방문조사기관: 니더외스터라이히 주농무성, 인스브루크 농업청)

□ 오스트리아의 휴경현황

○ 오스트리아도 기본적으로 독일과 같이 EU 차원의 휴경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에너지작물 등을 휴경농지에 재배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농업용 경지의 7.5%에 해당하는 52,000ha를 휴경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9,800ha(5.7%)는 휴경을 유지하고 있고 12,700ha(1.8%)는 에너지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순전한 휴경지는 사료이용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비료나 작물보호제를 투하해서도 안 됨.

○ 오스트리아에서 휴경지에 재배하는 에너지작물이 목적에 맞게 생산·유통·가공되고 있는 지를 관리감독하고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민간기구인 “오스트리아 농업시장”(AMA, Agrarmarkt Austria)임.

□ 휴경농지에 에너지작물을 재배하는 절차 및 준수내용 (2007년도)

① 에너지작물 재배자와 수집상/최초가공인 간에 재배 및 인도 계약을 체결함. (2007년 5월 15일 이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② 작물재배자는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집상/최초가공인은 재배 및 인도 계약서를 AMA에게 보냄. (2007년 5월 15일까지)

③ 적어도 수확하기 10일 전까지 산출물에 대한 표본검사를 통해 인도할 최소물량의 크기를 정함.

④ 작물재배자는 수확한 전 물량을 수집상/최초가공인에게 인도하고, 수집상/최초가공인은 이를 측량하고 건조시킴.

⑤ 수집상 또는 최초가공인은 받은 물량의 내용을 서식에 따라 AMA에 통지함.

⑥ 수집상은 받은 물량을 다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이를 서식에 따라 AMA에 통지하고, 최초가공인은 최초가공후 이 내용을 AMA에 통지함.

⑦ 2007년도 수확물은 2009년 7월 31일까지 최종생산물로 생산되어야 함.

6. 수집자료

◦ AgrarMarkt Austria(AMA), Nachwachsende Rohstoffe 2007, Merkblatt, Wien.

◦ AgrarMarkt Austria(AMA), Energiepflanzen 2007, Merkblatt, Wien.

◦ bbv Landsiedlung GmbH, Ihr Partner bei strukturverbessernden Maßnahmen in der Landwirtschaft

◦ Bundesministerium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Umwelt und Wasserwirtschaft, 2006, *Grüner Bericht 2006*, Bonn.

◦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BMVEL), 2005, *Meilensteine der Agrarpolitik*, Bonn.

◦ Bundesverband der gemeinnützigen Landgesellschaften(BLG), 2006, *Landliche Räume in der demographischen Falle*, Landentwicklung aktuelle Ausgabe 2006, Berlin.

◦ Neue Landwirtschaft (hrsg.), 2007, *Bodenmarkt 2,* 2006/2007, Berlin.

◦ Landpachtgesetz (Österreich)

◦ Landwirtschaftliches Siedlungs- Grundsatzgesetz (Österreich)

◦ Niederösterreich Grundverkehrsgesetz